성주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수당 지급액을 도내 다른 시군과 유사하게 지급하여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참전유공자 수당 변경 : (안 제4조 제1호)

- “월 5만원”을 “월 7만원”으로 2만원 인상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성주군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나. 예산조치 : 예산부서와 합의 후 예산반영 예정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 없음

라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공고기간 2017. 3. 2. ~ 2017. 3. 22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 지급액을 “월 5만원” 에서 “월 7만원”으로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
○ 법리 검토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입법 입안 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도내 시군별 참전수당 지원액을 비교해 볼 때 최저수준인 우리군 참전유공자의 참전수당 인상을 통해 보훈 가족의 명예와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